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8 선고 2022가단260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혁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1. 28.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7. 4. 3.자 4억 원, 2017. 4. 25.자 2억 2천만 원, 2017. 4. 28.자 2천만 원, 2017. 5. 10.자 1억 6천만 원, 2017. 8. 16.자 8천만 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권을 양수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595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신축한 G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46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지 내 상가 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외 G 단지 내 상가

위 부동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시행사) 주식회사 C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주식회사 E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계약이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건 매매계약 및 3 당사자간의 합의는 주식회사 C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 이 시공하는 천안 G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일괄분양계약에 대한 공급약정이다.

제2조(매매대금)

본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금액사십육억오천만원(₩4,650,000,000원), vat 별도로 한다.

제4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단위 천원, vat 별도)

전체	4,650,000	400,000	1,410,000	400,000	457,000	457,500	1,525,000
----	-----------	---------	-----------	---------	---------	---------	-----------

2. 계약금은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3. 1차 중도금 지급은 1차 중도금 중

1) 금육억천만원(₩610,000,000)원은 "갑"이 지정하는 신탁계좌[우리(계좌번호 1 생략) J(주)]에 입금한다.

2) 금일억원(₩100,000,000)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3) 금칠억원(₩700,000,000)은 동 매각목적물의 1층 K호 및 2층 L호, M호를 "갑"에게 제공한다.

4. 2차 중도금은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4. 3.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표 4억 원을 같은 날 직원 N을 통하여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E는 피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7. 4. 25. 2억 2천만 원, 2017. 4. 28. 2천만 원, 2017. 5. 10. 1억 6천만 원, 2017. 8. 16. 8천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4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0. E에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위 다.항 기재 지급액 합계액인 8억 8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양수금(판결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E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원을 직접 피고에게 입금하고, E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만들어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3억 2천만 원{= 양수금 원금 2억 원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1억 2천만 원(= 2억 원× 연 15% × 4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법인격 남용)

1)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P, Q, R, S, T, U, V, W 등 총 8인인 사실이 인정되어 그 인적 구성이 소외 회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위 8억 8천만 원이 이체될 무렵 또는 피고 회사가 설립될 무렵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자산상황이나, 소외 회사와 피고가 대외적인 영업 관계에서 동일한 주체로 취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인격 남용과 관련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또는 통정허위표시)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13. 8. 30.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2억 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N과 E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2017. 4. 3. E로부터 상가 매각대금 중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직원 N이 위 4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399,996,000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받게 된 경위는 물론 갑 제3호증의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소외 회사가 N을 통하여 2017. 4. 3. 피고에게 399,996,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볼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행위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선불리 단정하여 그 취소를 명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송금행위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N 및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송금행위가 사실은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증여행위임에도 피고 회사가 E로부터

상가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원고는 마찬가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무자력 상태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한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정의정